

UPDATES 법률정보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 개최

2013년 세법개정안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확대 등 회계제도 개혁방안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비상중재인 제도의 활용 증대 및
그 영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업데이트

CASES 업무사례

- 보고펀드의 삼양옵틱스 렌즈사업 부분 인수
- Baring Private Equity Asia의 로젠주식회사 인수
-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의 지엔에스비에이치씨 인수
-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하여 한진칼 설립
- KIKO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선고
- 개인생명보험 상품 수수료율 담합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선고
- MBK파트너스의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체결
- 삼성물산의 마포신라호텔 선매각
- GE의 국내 오피스빌딩 일괄 매각
- 한일조세조약상 '소유'에는 '간접 소유'도 포함
- KT-르완다 정부간 합작회사 설립 자문
- COSTCO 상표가 대형할인매장 운영에 관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NEWS 새소식

- 5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2014)
-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2013
-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 올해의 한국 로펌 외 7개 부문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13
- 공익활동 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인사·노무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이 2013년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저희 사무소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공개변론 대상 사건에서는 고정 상여금 및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임을 강조하면서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가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요건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합의는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유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률의 위임 없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같은 요건에 구애 받지 말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관들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등 통상임금 사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내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인천중구의료보험조합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과, 고정상여금(금아리무진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이 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과거와 다른 판결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박현제 변호사 hyunjae.park@kimchang.com

세무

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8일자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조세 감면 폐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세 감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현행 규정에 따르면, (1)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한 경우 또는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동 기업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의 주주인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자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2가지 감면 배제 사유에 더하여 우리 나라와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포함)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배제되며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포괄 사업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포괄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 사업양수도시 양수자는 양도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를 대리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때, 양수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대상이 현행 지분을 50% 이상 해외현지법인에서 지분을 10% 이상 해외현지법인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과세관청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미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8.7% 단일세율 적용대상 축소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18.7%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고용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기업일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확대 등 회계제도 개혁방안

금융위원회는 2013년 10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유한회사 및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무 적용

(1)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감사의무를 적용하고, (2) 유한회사의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IFRS(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1)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2) 외부감사인들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며, (3)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하고, (4)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회계감리 실효성을 제고함

- 외부감사 대상기준의 합리적 조정: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현행	개정방안
자산총액 100억 이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 이상	자산총액 100억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100억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총액 10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이거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좌동

금융위원회는 위 개혁방안에 관하여 2013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년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하고, 2014년 3월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개정안 국회 통과시기 및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완석 변호사 wansuk.kim@kimchang.com

소송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처분의 요건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공기관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그러한 ‘염려만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법은 제한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반드시’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법 시행규칙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취지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든, 공공기관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법과 국가계약법의 위와 같은 규정의 차이에 주목하고, 공공기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법 시행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부정하여, 공공기관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본 사안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법률규정에 대한 법리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향후 공공기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윤병철 변호사 bcyoon@kimchang.com, 강지현 변호사 jihyun.kang@kimchang.com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2013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8월 13일 공포되어 2014년 2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총수,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함
-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함
-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세부유형, 기준 및 적용제외 사유를 명시함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같은 항 제3호)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기회의 제공’(같은 항 제2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금지하되, 회사가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같은 항 제4호)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되, ‘연간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특히, 동 규정의 적용제외 사유로 (1) 수직계열화된 계열사 간 상품거래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관리 등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함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2013년 10월 2일 ~ 2013년 11월 11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국제중재·소송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비상중재인 제도의 활용 증대 및 그 영향

최근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비상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을 통한 임시처분 제도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 시점부터 중재판정부의 구성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국제중재의 특성을 악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집행면탈 목적으로 자산을 사기적으로 양도 내지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비상중재인 제도는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 및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정식 중재인이 선임되기 전 비상임시처분(Emergency Interim Relief)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임시처분의 범위도 단순 자산동결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의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anti-suit injunction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가 외국 선주를 대리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 건에서도 비상중재인이 일방당사자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철회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내린 예가 있습니다.

본건은 선박 매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조선소와 외국 선주 간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제공한 지급보증(on-demand bond)을 선주가 행사할 것을 우려한 조선소가 한국 법원에 지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건입니다. 선주는 SIAC에 위 가처분에 대한 비상임시처분 및 비상중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SIAC이 임명한 비상중재인은 선주의 신청에 따라 조선소에 가처분 신청의 철회를 명하는 비상임시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SIAC은 선주 측 신청일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비상중재인을 선정하였고, 동 비상중재인은 각 당사자간의 서면 교환 및 1일 심리기일을 거쳐 3주만에 위 처분을 내렸습니다.

SIAC의 경우 2010년 개정중재규칙에서 비상중재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30여건의 비상중재인 건을 처리하였다고 하며, 다른 주요 중재기관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중재인 제도는 국내 재판 절차에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회사들은 비상중재인 제도가 있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분쟁 초기부터 분쟁 전문가와 이를 활용할 가능성 내지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윤병철 변호사 bcyoon@kimchang.com, 임병우 변호사 bwim@kimchang.com, 노현식 변호사 hyunshik.noh@kimchang.com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업데이트

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다루어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후 업데이트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화평법·화관법 관련 향후 추진계획 업데이트

기업들은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연구활동 저해 및 영업비밀 유출, 제출자료 준비 비용 증가로 물질당 최대 1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화평법 시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기사에서도 이러한 산업계의 분위기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전경련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화평법 시행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화평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 제정 시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 법령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법률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올해 말까지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제정절차를 밟아 내년 3/4분기 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화평법상 소량면제 관련 논의

화평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면제 조항의 삭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량면제’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판매량이 소량인 경우 화평법상 요구되는 일정한 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 등)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조·수입 전에 해당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물질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 제정안에 따르면 보고대상물질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량이더라도 등록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 4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톤 이상'이라는 소량면제 조항이 삭제되었고, 최종 공포된 화평법도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채택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소량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소재를 개발하는 글로벌/국내 기업들이 소량면제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국내에 지은 R&D 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화평법에 따르면 판매자도 제한 없이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량면제 인정 여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쟁점들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업들은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박정환 변호사 jeonghwan.park@kimchang.com

보고펀드의 삼양옵틱스 렌즈사업 부분 인수

2013년 8월 19일, 보고펀드는 삼양옵틱스의 지분 100%를 에스와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68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삼양옵틱스는 국내 최대 카메라 교환 렌즈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측은 본건 거래를 위해 삼양옵틱스의 렌즈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삼양옵틱스를 신설하였고, 존속법인은 명칭을 에스와이 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구조 수립, 법률 실사, 규제 관련 자문,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인수금융 자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Baring Private Equity Asia의 로젠주식회사 인수

2013년 7월 31일 Baring Private Equity Asia는 국내 택배 업체인 로젠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Baring Private Equity Asia를 대리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법률 실사의 수행,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하는 정부인허가의 취득, 인수금융계약의 협상 및 체결,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의 지엔에스비에이치씨 인수

2013년 6월 28일, 씨티그룹 계열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은 제너시스 그룹 및 재무적 투자자인 엔에이치코오롱 그린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국내 4위의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지엔에스비에이치씨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을 대리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법률실사, 관련 계약의 작성 및 협상, 정부인허가의 취득, 인수금융계약의 협상 및 체결, 거래종결업무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하여 한진칼 설립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1일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신설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진그룹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 및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법률실사의 수행, 분할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정부인허가의 취득, 거래종결업무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KIKO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지난 5년간 공방을 거듭해 온 KIKO 사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위 KIKO라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구조화된 통화파생금융상품의 공정성, 환헤지 적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마진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마진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매수한 옵션의 가치가 고객이 매수한 옵션의 가치에 비해 크다고 하여 당해 상품이 불공정하거나, 이러한 옵션의 가치 내지 금융기관의 마진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비정형 장외파생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1) 금융기관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의 거래목적,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고객이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돌아가 고객이 그 거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고, (2) 설명의무 대상은 상품의 구조, 내용 및 위험성이고 그 외에 상품의 금융공학적 구조나 원리, 옵션의 이론가, 상품의 계약 당시 마이너스 시장가치, 은행의 마진, 최악의 시나리오, 중도해지 등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외 교수 5인에 대한 전문가증인신문, 기업들이 제기한 전문적인 금융공학 쟁점을 비롯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수 차례에 걸친 법정 프리젠테이션, 대법원 공개변론 등을 거쳐 KIKO를 비롯한 다양한 통화옵션상품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피고 금융기관이 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한 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공정거래

개인생명보험 상품 수수료를 담합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12월 15일자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수 건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바, 최근 일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하여야 함
- 생명보험 사업자들은 교환된 정보 외에도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자신의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예정이율 등에 일정한 형태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지 않음
-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위 판결들은 사업자들간에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을 뿐 생명보험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는 생명보험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나,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건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생명보험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보험

MBK파트너스의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체결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는 2013년 8월 26일 ING그룹으로부터 ING생명보험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ING생명보험에 대한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협상업무, 그 밖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삼성물산의 마포신라호텔 선매각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3년 7월 3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건축 중인 비즈니스 호텔을 부동산투자기구에 준공 전 선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비즈니스 호텔은 건축주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직접 시공 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는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이를 15년간 임차하여 비즈니스 호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비즈니스 호텔의 개발 및 선매각 거래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뢰성 있는 매수인을 선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협상 및 체결 절차를 주도하는 등 비즈니스 호텔 선매각 거래 전반에 대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위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GE의 국내 오피스빌딩 일괄 매각

지이리얼에스테이트(GE Real Estate) 주식회사는 2013년 7월 4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트리스빌딩, 분당구 야탑동 소재 탑빌딩, 성남시 수내동 소재 서영빌딩, 대구 중구 소재 호수빌딩을 부동산투자기구에 일괄 매각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오피스빌딩 일괄 매각거래를 위하여 거래와 관련된 제반 협상, 부동산매매계약 및 관련 계약들의 체결은 물론 원만한 거래완결 절차를 이끄는 등 거래 전반에 대하여 지이리얼에스테이트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한일조세조약상 '소유'에는 '간접 소유'도 포함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의 주체인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소유'는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소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방송·통신

KT-르완다 정부간 합작회사 설립 자문

KT는 지난 2013년 6월 르완다 정부와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민관협력사업으로 현지 정부가 가진 유·무형의 사업권이나 네트워크 인프라 등의 자산과 기업체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자금, 사업수행 역량 등의 자산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모델)에 따른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25년간 주파수 독점사용권을 부여 받아 르완다에서 LTE 망 구축 및 운용사업을 영위할 계획입니다.

한편, KT는 2013년 9월 르완다 정부와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현지 규제에 대한 조사, 법률실사의 수행, 주주간 계약 등 관련 계약의 작성, 르완다 정부와의 협상, Global Merger Filing, 거래종결의 준비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통신회사가 최초로 외국 정부와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로 합작투자를 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COSTCO 상표가 대형할인매장 운영에 관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COSTCO라는 상호의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스 코스트코 인터내셔널 인크(“코스트코 인터내셔널”)는 한국에서 ,  등 상표들을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코스트코 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COSTCO의 명성에 편승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유사 표장 사용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가처분 신청인인 코스트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상호와 유사한 ‘COSTOP’을 상호로 하는 대형할인매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등을 상표로 출원하여 향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가 한국에서 신청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들의 사용 예정 상표가 극히 유사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이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신청인의 등록상표 중 컬러 상표인 의 주지성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하면서 신청취지를 확장하여 1심 가처분 신청 이후 피신청인들이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상표로 출원한 표장들을 금지대상 표장에 추가하고, 컬러 상표인  뿐만 아니라 흑백 상표인 의 주지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흑백 상표인 에 대해서도 대형 할인매장 영업에 관한 주지성을 인정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의 사용이 예상되는 표장들에 대해 추가로 금지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라1491 결정).

이 사건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가 가진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비교 대상 양 표장의 호칭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경법의 법리에 따라 양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및 색상, 양 표장이 사용되는 제반 환경적 요소들의 유사성까지 유사성 판단의 기초로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WARDS

5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2014)

세계적인 금융전문 미디어그룹 Euromoney가 매년 발행하는 global law firm directory인 'IFLR1000'의 2014년판이 최근 발행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개 전체 업무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Tier 1)에 선정되어, 10년 연속 전 분야 선두 로펌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7명의 변호사들이 해당 분야의 Leading Lawyers로 선정되었으며, 2명의 변호사가 Rising Star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Firm Rankings

- Banking &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etition
- M&A
- Restructuring & Insolvency

Leading lawyers

- 정계성, 정경택, 박수만, 정진영, 박종구, 윤희선, 고창현

Rising Star

- 김철만, 정명재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2013

Thomson Reuters 소속의 아시아지역 법률전문 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2013'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의 한국 로펌(The Korea Law Firm of the Year)'으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는 매년 홍콩 및 주변국(한국, 대만)의 로펌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분야별 우수 로펌, 기업법무팀, deal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김·장 법률사무소가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상(Korea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사무소는 3년 연속 한국 최고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미디어 Euromoney 계열의 중국법률 전문 월간지 China Law & Practice가 주최하는 China Law & Practice Awards는 매년 혁신적인 딜 및 우수 로펌을 선정하는 행사로, 4개월간의 독자적인 인터뷰와 조사를 거쳐 발표됩니다.

올해의 한국 로펌 외 7개 부문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13

Thomson Reuters 소속의 아시아지역 법률전문 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가 11월 14일 서울에서, 제1회 'ALB Korea Law Awards 2013'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저희 사무소는 'Korea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를 포함한 8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최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ALB는 사전 시장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판정단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 우수 로펌, 기업법무팀, deal 등을 선정하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Firm Categories - 단독 수상

- Korea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
- Deal Law Firm of the Year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
-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Law Firm of the Year (금융 부문 올해의 로펌)
- Dispute Resolution Law Firm of the Year (소송·중재 부문 올해의 로펌)
- IP Law Firm of the Year (지식재산권 부문 올해의 로펌)
-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정계성 변호사 (로펌 Managing Partner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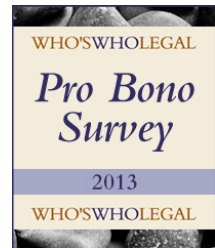
Deal Categories - 공동 수상

- Debt Market Deal of the Year (Debt Market 분야 올해의 딜): Doosan Infracore Co's Senior Capital Securities Offering
- 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Equity Market 분야 올해의 딜):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of ArcelorMittal Mining, Canada

공익활동 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인 영국의 Who's Who Legal이 최근 발표한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0대 프로보노(Pro Bono,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기부활동) 선도 로펌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Who's Who Legal은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는 프로보노 활동에도 진취적으로 앞장 서 왔다"라며, "더욱 충실하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올 5월 프로보노 전담기구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요 비영리 국제기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매월 2~3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ACTIVITIES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지난 9월 25일,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의의 주최로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활성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국제중재를 대표하는 중재전문가 및 국제중재기관의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해외 각국의 중재법 개정현황과 그 효과, 국제중재에서 중재지의 요건과 선택기준, 그리고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윤병철 변호사와 박은영 변호사가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윤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Korea Arbitration Act Revision Committee Presentation'을 주제로, 박 변호사는 마지막 세션에서 'LCIA and Its Role and Status under Arbitration Laws'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8th Annual Asset Management Seminar in Singapore

지난 9월 6일 글로벌 미디어 Euromoney 가 주최한 '8th Annual Asset Management Seminar'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필국 미국변호사와 이준호 변호사가 '한국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의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연기금 자금 운용에 대한 활발한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EU,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대만,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의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및 관련 규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제3회 'IVI-김앤장의 날' 행사 개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백신 보급으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IVI-김앤장의 날' 모금행사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이틀간 저희 사무소 빌딩에서 개최된 후원행사는 올해도 많은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18일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IVI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후원활동의 정례화 및 법무지원 추가를 공식화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Newszine

December 2013

金·張 法律事務所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내자동 세양빌딩) (우) 110-72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3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 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